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

제정일: 2017.11.01. 개정일: 2022.08.1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점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본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이하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시행시기에 따라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2. "장기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 3. "단기현장실습"은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란 현장실습학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 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7. "실습일수"는 실습기간 중 실제 출석한 날로, 공휴일 및 각종 휴일 등은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제3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호와 같은 취지 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기회로 활용한다.
 -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 ·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운영(직무수행 및 지도) 계획
 -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 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운영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실시
- 2. 실습기관 운영계획서의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 3. 학교는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 4.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모집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 5. 실습기관은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 6.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내역 확인 및 학교의 사전교육 이수
- 7. 대학-실습기관-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 8.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학교는 상해보험 의무가입
- 9. 실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 10. 학교는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 11. 실습기관은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 12. 학생은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 13. 학교는 제13조의 학점인정 기준에 의거 학점인정 처리
-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 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 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5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면서 실습일수 기준 20일 이상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되,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 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우영하여야 한다.
- 4.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전체 실습시간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제6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④ 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

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⑤ 국외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1항에서 제5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 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현장실습학 기제는 국내·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 제7조(학생 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 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⑤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등의 조치 실시
- ⑥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⑦ 제9조 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⑧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 기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실습기관에서 이 세칙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 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일수로 인정한다.
 -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

야 하다.

-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8조(학생 의무 및 권리) ①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 ② 학생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4. 이 세칙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 2.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4.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5.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1. 제1항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 2.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3. 협약사항을 위반한 자

제9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없다.
 -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 선발하는 경우
 -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별지 제1호 서식)
 - 2.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을 보장
 -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제공
 -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 ·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
 - 6. 그 밖에 관련 규정 준수
-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 ⑤ 실습기관에서는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실습일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하며, 현 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1주일 이내 출석표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별지 제3호 서식)
- ⑥ 실습기관이 제3항의 의무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생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mark>현장실습지원센터장</mark>은 학기 종료 후 해당 기관 평가를 통해 향후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 ② 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 8. 그 밖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 ③ 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④ 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매뉴얼 제1호 서식)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⑤ 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매뉴얼 제2호 서식)을 실시한다.
- ⑥ 센터에서는 제4항 및 제5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센터는 학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다.
 -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 4.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 6.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 7.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 8.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 9.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 10. 수강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 11.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 ⑧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 제11조(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

- 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1.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 2.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3.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및 학점인정

- 제12조(학생 지원자격) 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는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
 - 1.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계절수업)의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는 휴학생도 신청을 허용
 - 2.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전공 소속 학과(부)의 심의 및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통해 2학년 이상 학생의 지원을 허용. 단, 지원 당시에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전공 15학점 이상 이수한학생에 한하여 허용
- ②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제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등)은 제한
 -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 제한
 - 3. 졸업유예자(4년제 기준 8학기 초과자) 제한
 - 4.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방학 중 시행되는 단기현장실습 제한
 - 5. 동일 학기나 동일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로 제한
- ③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다만, 방학 중 시행하는 단기현장실습은 예외로 한다.
- ④ 기타 세부 신청자격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학기제는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3학점 단위로 인정하나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소 1개월(실습일수 20일)이상 운영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은 이수 여부에 따라서 P(Pass)/N(Non-Pass)으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1]에서 정한 실습기간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 1. 단기현장실습은 1회의 실습으로 3~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2. 장기현장실습은 졸업시까지 1회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3.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시까지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 ③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별 수강 허용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계절학기에 실시되는 단기현장실습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타 교과목의 수강은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수강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온라인 개설강좌, 졸업논문, 사회봉사에 한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현장실습 신청 당시 지원자격이 충족되었으나, 학기별 성적이 최종 확정된 후 지원자격 및 학점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현장실습을 취소하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⑥ 현장실습 학기제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관의 사정에 의해 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 및 합의에 의거 학생이 중도 포기 한 경우, 학생은 [별표2]에 의거하여 기간별 학점을 인정받거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 2.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학생의 과실에 의해 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은 N으로 처리한다. 이때,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 ⑦ 현장실습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전공소속 학과장이 전공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장기현장실습의 전공인정은 [별표3]에 의거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2개 이상의 전공으로 학점인정은 불허하며, 전공선택으로 인정한 후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 2. 동일 기간의 단기현장실습 학점은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되, 인정전공 및 이수구분을 분할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대학 및 이과대학 화학과에서는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⑧ 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과목명은 [별표4]과 같이 인정한다.
- ⑨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한 학점과 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상호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⑩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성적인정절차) ① 현장실습이 종료된 자는 현장실습지원세터에서 요청하는 제증빙서류를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학점인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학생의 연수결과 제증빙서류를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이때, 기업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재평가를 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15조(기타) ① 본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① 제13조 제1항, 휴일의 실습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 ② [별표 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점인정사항 및 [별표 4] 과목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 세칙 개정 전 처리된 사항을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3조 제1항의 실습일 인정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보치>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3조 제8항에 의거한 [별표4]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목명은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 기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3조 제1항 및 [별표1]과 [별표2]의 사항은 2022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학기제부터 적용하다.

제3조(운영사항) 제10조에 의거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은 LINC 3.0 사업 운영 기간에는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별표1] 실습기간별 학점인정 기준

구분	실습일수	학점
단기 현장실습	20일 이상	3학점
선기 연경결합	40일 이상	6학점
	40일 이상	6학점
장기 현장실습	<u>56</u> 일 이상	9학점
	72일 이상	12학점

※ 현장실습 신청 당시 현장실습 예비인정(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인정

[별표2] 중도해지자 학점인정 기준

실습일수	학점
20일 미만	0학점
20일 이상 ~ 40일 미만	3학점
40일 이상 ~ 56일 미만	6학점
56일 이상 ~ 72일 미만	9학점
72일 이상	12학점

[별표 3] 장기현장실습 전공별 전공학점 인정표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법과대학	6학점
정경대학	9학점
경영대학	9학점
호텔관광대학	12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이과대학	9학점

자율전공학부	6학점
사 표 선 ㅎ 역 구	0 역 점
공과대학	9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2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국제대학	6학점
국제·경영대학	12학점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6학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9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2학점
체육대학	9학점

[※] 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과대학은 장기현장실습을 시행하지 않음

[별표 4]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목명

구분	이수구분	국문명	영문명
	계절학기전공선택	단기현장실습(전공)	Cooperative education(major)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전공선택	단기현장실습(다전공)	Cooperative education(multi major)
	계절학기자유선택	단기현장실습	Cooperative education
장기현장실습	전공선택	장기현장실습(전공)	Long-term Cooperative education(major)
	전공선택	장기현장실습(다전공)	Long-term Cooperative education(multi major)
	자유선택	장기현장실습	Long-term Cooperative education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신	·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OH.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구분		상	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기관현황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시간 / • 1주 기준 : []시간
근로형태	정규 근로일수	■ 주 : []일 / • 근로요일 : [<i>직접기입</i>]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지 취 저 귀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전형절차	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및 일정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운영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 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 (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 (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 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성적 평정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불임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경희대학교 귀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	경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	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립	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	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립	 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상황별 실시[] ■주기적/상시적 실시[]								
	크로 크럼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0 //0	■ 참여 약정에 대한 산재모임들 의무 가입임(입작 의무가입 / 미가입지 문영 물가)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N[]								
기	라사항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기준] /[]원								
신스	·지원비	│ ■지급기준 : [시간 연장실습시간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7 20	기준]								
		지급예정일 ■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⁹ 사항 ■식사[] ■교통[]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부서명 성명 직위								
현경	당교육	연락처 휴대폰								
담	당자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실습기관 기본 정보'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목표	*								
	7#	*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117"=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실습		* 검토하여야 함								
직무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운영	*								
	/	*								
	, 기도									
	계획									
	계획	* -								
		* -								
		*								
	전공	00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000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인원)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학생	평점									
요건	요구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_ · 역량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___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 1조(교육과정) 20_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	p) 과정으로	운영한다.
-----------------------	-----	-------	--------------	---------	-------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실습기관명 : _____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 3. 실습기간은 <u>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u>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 6. 실습지원비 등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u>월/주</u>] 기준 _____원(세전)을 [<u>당월/의월</u>] 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 라. 학교는 [<u>월/주/일</u>] 기준 _____원을 <u>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입</u>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

[별지 제2호 서식]

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u>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u>],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u>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u>]. 별도의 (근로)계약서 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년 _월 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학명 기입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총장또는현장실습지원센터장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0000학과 000(인)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u> </u>	. • • •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명가영역 명가영역						평가	점수					합계
6/167			우수	우	수	보	통	01:	흡	매우	미흡	<u>а</u> л
	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업무숙지 능력		10		8		6		4		2	
ᆺᇸᆫᇋ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8		6		4		2	/60
수행능력	업무이행 (결과)수준		10		8		6		4		2	/60
	혁신/창의성		10		8		6		4		2	
	소통/표현 능력		10		8		6		4		2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4		3		2		1	
ᄉᇸᇚᆫ	책임감		5		4		3		2		1	/20
수행태도	대인관계/협업 능력		5		4		3		2		1	/20
	업무절차/기준 준수		5		4		3		2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20		16		12		8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등 기술	바랍니다.	

불임 서류 │출석부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경희대학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붙임]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 은 - 년도	주차	Ę		Ē	화	4	-	5	루	Ē	3	Ē	Ē	Ş	길	출석	결석	휴일
O.T.	ナベ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수	일수	일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년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년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로 나와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나오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0	ᅨ시	율	<u>i</u>	Ē	!	4	<u> </u>	5	륵	=	₹	<u> </u>	Ē	Ş	일	출석	결석	휴일
년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수	일수	일수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후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 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3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 취급하지 않는다.□ 취급한다.(6-2 문항으로)
6–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 제공된다. □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매뉴얼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

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 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2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3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4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u>시간</u>)
5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 생하고 있다.
6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u>시간</u>)
7	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u>시간</u>)
8	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9	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 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 생 있음)

[매뉴얼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프는 건성됩니다기에 단성 중인되니지(다양 내용당)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0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 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 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 요? [단일선택]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 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4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u>%</u>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15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 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 단된다.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16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 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17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